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무지원인 지원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6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직무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	3

I. 제안경위

2026년 5월 19일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는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임에도 ‘사업주’라는 이유로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 대표자 역시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특히 기관 운영, 인력 관리, 사업 계약과 같은 핵심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출퇴근·의사소통·문서작성 등에서 직무지원이 더욱 필요함. 이에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원활한 직업생활을 위해 직무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중증장애인 대표자는 ‘사업주’라는 지위와 달리 경제적으로 영세한 경우가 많음.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483.4만 원 대비 63.3% 낮으며 보조기기, 의료비 등 매달 약 17만원 수준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이에 ‘근로지원인’이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 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해서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의2제1호).

Ⅲ. 검토의견

1. 직무지원인 지원 대상 확대 및 명칭 변경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와 같이 공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1조의2).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u>근로지원인</u>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 <u>근로지원인</u> ”이라 한다)을 보내 <u>중증장애인이</u>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의2(<u>직무지원인</u> 서비스의 제공) ① ----- ----- ----- <u>직무지원인</u> ----- <u>중증장애인인 근로자 및 사업주(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가</u> ----- ----- ----- -----.

② 제1항에 따른 <u>근로지원인</u>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u>근로지원인</u> 서비스의 제공 2. (생략)	② -----<u>직무지원인</u>----- ----- ----- ----- ---.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 ----- ----- -----. 1. ----- -----<u>직무지원인</u>----- ----- 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직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직업생활의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음.

[표] 연도별 근로지원 사업 예결산 및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소)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액	204,713	227,025	242,458	255,669
집행액	204,713	227,025	242,458	255,669
근로지원인	13,800	13,571	13,573	13,377
이용장애인근로자	15,015	16,400	18,195	19,324
사업체수	3,734	3,917	4,104	4,183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현행 제도¹⁾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주”로 활동하는 중증장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사한 지원 필요성이 있음에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비영리기관의 대표자는 기관 운영, 인사관리, 대외협력 및 계약 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에도 장애로 인한 직무상 어려움을 지원받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의 명칭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직무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이하 생략)

지원인”으로 변경하고, 비영리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직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지위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도 필요한 직무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지원대상을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유형의 사업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근로자의 경우, 중증장애인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그 지원대상을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주 역시 장애로 인해 문서작성, 의사소통, 대외활동 등 직무수행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원대상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범위의 명확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19조의2제1항은 지원 대상 사업주를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등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의미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예를 들어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익적 목적을 일부 수행하는 영리법인의 대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비영리 기관”은 현행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정의된 법률용어가 아니며, 「민법」상 비영리법인²⁾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나 각종 공익적 조직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어떠한 조직을 지원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집행기관의 해석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간에도 지원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원대상인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판단기준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업무지원인 제도와 체계정합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³⁾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하 “장애경제인”)의 안정적·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지원인 제도를 두고 있음. 동 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직무수행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직무지원인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사업주를 위한 직무지원인 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한 직무지원이라는 동일·유사한 정책수단이 두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벤처부 소관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장애경제인의 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⁴⁾을 고려하면, 사업주에 대한 직무지원 역시 동 법률의 업무지원인 제도를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확대하거나 지원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정합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두 제도가 병존할 경우 지원대상의 구분기준, 중복지원 여부, 소관 부처 간 역할분담 등에 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간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사업주에 대한 직무지원인 제도의 운영방식 및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직업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대상, 지원시간 및 지원내용 등이 근로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데에 반해, 사업주는 근로자와 달리 직무의 범위와 성격이 다양하므로 사업주에게 현행과 동일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별도의 지원요건과 지원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지원대상을 사업주까지 확대할 경우 직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부담과 기존 근로자 지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 부칙 제3조는 현행법상 “근로지원인”이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의4제2항제24호⁵⁾에서도 “근로지원인”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공익적 직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향후 일반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장애인 사업주와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⁶⁾임.

문 의 처
02)6788-5539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6)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및 업무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하다는 의견임.

참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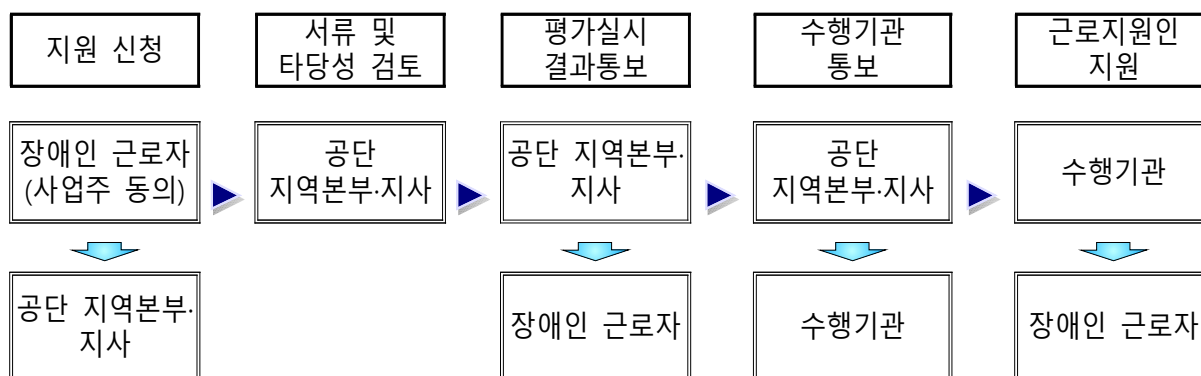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 **(목적)**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 지원
- **(지원대상)** 핵심적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
- **(지원조건)** 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근로지원인 임금 12,539원(주휴수당 포함),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 **(지원유형)** 근로지원인의 지원 기능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

지원유형	지원기능	자격기준	주요 장애유형	급여기준
[1유형] 업무보조형	부수업무 지원	18세 이상	신체적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등)	최저임금
[2유형] 의사소통형	의사소통 지원	전문 자격증 또는 경력	청각장애 (청각, 언어)	최저임금 ×120%
[3유형] 적응지도형	작업지도 및 정서관리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	발달, 정신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	최저임금

○ (지원절차)



참고 2

업무지원인 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개요

- **(목적)**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게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하여 장애인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으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
- **(지원조건)** 주 40시간 5일 이내, 1일 8시간 이내 활용 가능
- **(지원내용)** 업무지원인 임금 10,630원(최저임금의 103%), 장애인 사업주 본인부담금 5% 납부
- **(지원유형)** 업무지원인의 지원 기능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

구분	내용
업무보조형	· 업무지원인을 배치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보조 수행 지원 - 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이내 한도(업무지원인 인건비의 95% 지원)
의사소통형	· 수어통역, 점역교정, 속기 등 전문업체(전문가)와의 업무수행 비용 지원 -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용역비 총 공급가액의 95% 지원(그 외 비용 자부담)
경영지도형	·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 컨설팅 등 전문업체와의 업무수행 비용 지원 -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용역비 총 공급가액의 95% 지원(그 외 비용 자부담)

○ (지원절차)

